

교수학습센터 운영규정

- 제 정 : 2012. 6. 29. 개 정 : 2019. 6. 18.
- 개 정 : 2013. 10. 29. 개 정 : 2020. 3. 13.
- 개 정 : 2015. 7. 29. 개 정 : 2021. 9. 1.
- 개 정 : 2017. 2. 28. 개 정 : 2022. 3. 1.
- 개 정 : 2018. 3. 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수원과학대학교 교수학습센터(이하 “센터”)라 칭한다. <개정 : 2020.3.13.>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교수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: 2020.3.13.>

제3조(위치) 본 센터는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 내에 둔다.

제4조(설치목적) 본 센터는 본 대학에서의 교육과 학습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교수학습법을 연구개발하고 교수 및 학생에게 교수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본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(업무) 본 센터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수학습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<개정 : 2020.3.13.>
2. 기초학습능력진단평가에 관한 업무
3.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<개정 : 2022.3.1.>
4.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<개정 : 2022.3.1.>
5. <삭제 : 2021.9.1.>
6. <삭제 : 2020.3.13.>
7. 역량기반 교수매체개발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<개정 : 2020.9.1.>
8. <삭제 : 2021.9.1.>
9. <삭제 : 2022.3.1.>
10. 교수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선 및 수요조사에 관한 업무
11. 기타 교수학습지원에 관한 업무

제 2 장 조 직

제6조(조직) ① 본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을 두며, 필요에 따라 부센터장, 연구위원 및 전문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.

② 본 센터에는 업무 처리를 위해 직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③ 본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④ 교수학습지원을 위해 대학의 관련 부서와 협력한다.

제7조(센터장) ① 센터장(및 부센터장)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총괄한다.

③ 센터장(및 부센터장)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재 정

제8조(재정)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 회계로 총당한다.

제9조(예산 및 결산) 본 센터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 대학의 회계기준에 따르며,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(해산) 본 센터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.

제 4 장 기 타

제11조(규정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